

■ 인지세 납부 안내

구분		내용
과세대상		※ 관련법령 : 「인지세법」 제3조 제1항 제1호,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-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'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'로 인지세 과세 대상 -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'도급 및 위임에 관한 증서'로 인지세 과세 대상
납부방법 및 기한		-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 및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후 계약서와 함께 보관 - 분양 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
전자수입인지 구입방법 (택 1)	오프라인	우체국 또는 은행(해당기관 영업시간 내 방문)
	온라인	전자수입인지(https://www.e-revenuestamp.or.kr) 사이트

※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, 과소납부, 인지불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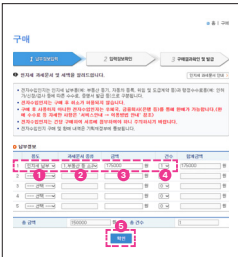
※ 정부수입인지는 계약서와 함께 등기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,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하여 정부수입인지 재구매시에는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보관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전자수입인지 구매 금액

구분	과세표준	인지세세액	사업주체(50%)	계약자(50%)
아파트 공급계약	10억원 초과	35만원	17만 5천원	17만 5천원
발코니 확장	1,000만원 ~ 3,000만원	2만원	1만원	1만원

※ 「인지세법」 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균등(각각 50%)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.

■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

①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(www.e-revenuestamp.or.kr) 접속 또는 네이버 검색창 “전자수입인지” 검색	
②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	③ 비회원 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 
④ 구매 : 납부정보 입력  구매 : 납부정보 입력 1. 용도 : 인지세 납부 2. 과세문서 종류 : - 아파트 :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- 발코니 : 도급 또는 위임 3. 금액 : 175,000 / 10,000 4. 건수 입력 : 각 1건 (총 2건) 5. 확인 및 결제	⑤ 출력  전자수입인지는 출력물이 원본이므로 1회만 출력 가능 합니다. (재출력 불가, 테스트 출력 요망)

※ 전자수입인지 구매는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은행을 방문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.